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9. 22. Vol. 37

■ 농정이슈

정부, 쌀 관세율 513% 결정 및 쌀 산업 발전대책(안)

■ 정책브리핑

2015 예산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분야)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정부, 쌀 관세율 513% 결정 및 쌀 산업 발전대책(안)〉

- [정부, 쌀 관세율 및 쌀 산업 발전대책 발표, 9.18일]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발표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 [정부, 쌀 관세율 513% 결정] WTO협정에 근거,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 보호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 명시**,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 거쳐 확정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FTA에서 쌀 양허대상 제외] 기 체결한 FTA 및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 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 예방하기 위한 조치 마련
※ 20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 저가신고 통한 쌀 편법수입,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방지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포함

- (사전세액심사)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관세액 심사하는 제도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방향] i) 농가 소득안정 장치 강화, ii) 국산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iii) 수요기반 확충, 우량농지 중심으로 생산기반 유지
- [2015년 예산안 전년 대비 1,568억 원 증액]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 ※ (증액, 억 원) 쌀 고정직불금 710, 농업자금 금리인하 146, 들녘경영체 육성 15,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11, 쌀 소비활성화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RPC 시설현대화 등) 27, 유기지속직불금 59 등

▣ 농정이슈

▣ 쌀 산업 발전대책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쌀 농가 소득 안정	직불금 인상	- 고정직불금 단가 2015년 ha당 100만 원 조기 인상 - 쌀값 하락 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유사보완
	이모작 활성화 도모	동계논 이모작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들녘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이모작 경영체 우선 지원,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 허용(농지법 개정, 2014)
	영세·고령농 안정망 확대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14) 85만 원/월 → (2015) 91 -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 65세 이상)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들녘경영체 규모화·조직화	- 들녘경영체 확대: (2014) 158개소 → (2024) 600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 3만 호 확대,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비용절감 도움 되는 기술(무논점파, 파종상비료) 개발·보급 -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 인하(3% → 2.5), 경영회생자금 금리 인하(3% → 1)
	국산쌀 품질 제고, 차별화 지원 확대	- 중장점선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매년 7개소씩 개보수해 우수 보급종 안정적 공급 -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들녘단위로 품종 통일 재배, RPC 공동출하 유도 2015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 도입: 현재 지급기간 5년인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지속 시 3년간 추가로 직불금 지원
	유통역량 강화	- RPC 통합: (2013) 234개소 → (2024) 120, 통합 RPC에 인센티브 제공 - 노후화된 RPC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2014) 3개소 → (2015) 6 → (2020 이후) 75 -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60%(2013년 45.7%) 확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우량농지 보전: 농지전용 협의 시 개발수요를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 - 수리시설 확충, 기존 수리시설방조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수요기반 확충	- 쌀 소비촉진 홍보 강화, 예산 지속 확대: 쌀 소비활성화 사업 (2013) 35억 원 → (2014) 40 → (2015) 55 - 쌀 가공산업 고부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쌀 활용한 가공제품(고급주류, 제2의 햅반 등) 개발 -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지원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쌀 자조금 도입 여건 조성	- 쌀 생산자단체와 협의, 전문가 논의 거쳐 쌀의 특수성 반영해 자조금 설치 기준 완화 등 제도 도입 위한 여건 마련 - 자조금 도입에 앞서, 미래 쌀 산업을 선도할 경영체 위한 교육훈련 과정 신설, 2015년부터 연간 약 5천 농가 실시

자료 : KBS·SBS·YTN(2014.9.17.) / KBS·SBS·YTN·경향신문·국민일보·NEWSis·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4.9.18.)

참고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_「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2014.9.18.)

▣ 농정이슈

▣ 한·중 FTA 제13차 협상 개최

- **[한중 FTA 제13차 협상 개최, 9.22~26일, 베이징]** 그동안 협상성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 등에 관한 협정문 및 시장개방 논의
 - ※ (한국)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참석
 - ※ (중국)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참석
- 자료 : KBS(2014.9.17.) / 국회뉴스news1·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4.9.18.)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중 FTA 제13차 협상 - 9.22(월)~26(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2014.9.17.)

〈중국 정부 관리,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 낙관〉

- **[중국 상무부 대변인, 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성 낙관 입장]**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좌담회(9.16일)에서 한중 FTA 협상 진전 상황 매우 양호하다는 견해 밝혀
 - ※ 한·중 FTA가 양안(兩岸)간 상품무역협정보다는 먼저 타결될 가능성에 무게 실어

〈한중 FTA 관련 주요 언급내용〉 “양국 정부, 특히 양국 최고 지도자들 간에 연내 타결에 대한 공통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 “협상과정에서 양보해야 할 대가도 있고 타협을 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 내용〉 “7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일부 협상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민감품목 보호 수준 등 아직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양국이 연내 타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 SBS·YTN(2014.9.16.) / 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중앙일보·헤럴드경제(2014.9.17.)

▣ TPP 수석대표회의(9.1~10일)에서 진전

- **[TPP 분야별 회의 및 수석대표회의 개최 결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 상당한 진전 있었으며, 조만간 협상 재개해 막판 조율 나서기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분야 정레브리핑(9.17일)에서 국영기업, 지적권, 원산지, 규제조화, 노동분야에서 일정한 진전 있었던 것으로 파악
 - (미국무역대표부) TPP 협상 타결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지 않은 상황
 -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리)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상당수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 평가, 다만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님을 밝혀

자료 : KBS·SBS(2014.9.12.) / 매일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9.13.) / news1·NEWSis·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4.9.18.)

농정이슈

기획재정부, 2015 세법예산(안) 발표

-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221.5조 원 전망, 전년대비 2.3% ↑
 - (농특세) 전년대비 4.1% ↓
 - (소득세) 전년대비 5.7% ↑,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 (법인세) 전년대비 0.1% ↑, 법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2014년 예산 수준 전망
 - (부가가치세) 전년대비 0.8% ↑,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해 소폭 증가
 - (관세) 전년대비 5.1% ↓, 환율하락, FTA 체결 효과로 감소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 원

구분	2013년 실적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대비 증감	%
총 국세	201.9	216.5	221.5	5.1	2.3
[일반회계]	195.4	209.3	214.2	5.0	2.4
소득세	47.8	54.4	57.5	3.1	5.7
법인세	43.9	46.0	46.1	0.1	0.1
부가가치세	55.9	58.4	58.9	0.5	0.8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5	13.5	△0.01	△0.1
관세	10.6	10.5	10.0	△0.5	△5.1
기타	24.0	26.5	28.2	1.7	6.4
[특별회계]	6.5	7.2	7.3	0.1	1.0
주세	2.9	3.0	3.3	0.3	8.2
농특세	3.6	4.2	4.0	△0.2	△4.1

자료 : NEWSis아주경제연합뉴스(2014.9.19.)

참고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2014.9.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

- [농관원, 6차 산업화 위한 맞춤형 지원]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품질 인증업체 10개 업체 선정, 맞춤형 지원(사업예산 336백만 원, 2014년 280)
 - ※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한국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것으로 정부가 품질 보증하는 식품
 - (주요사업) 체험 발굴, 네트워크 구축·홍보, 전통식품 산업의 지속성장 모델 육성
- 자료 :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4.9.16.) / 농민신문(2014.9.17.)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4.9.19.) / 농촌여성신문(2014.9.22.)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 - 전통식품 인증 10개 업체에 브랜드 개발비 등 280백만 원 지원 -」(2014.9.16.)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2015 예산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분야)

자료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2014.9.18.)

개요

- [정부, 2015년 예산안* 발표] 총지출 376조 원(전년대비 5.7% ↑),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 위해 **최대한 확장적 편성**
 - ※ 국무회의(9.18일) 거쳐 9.23일까지 국회 제출
 - (기본방향) i) 경제 활력 회복 위해 적극작선제적 재정부운용, ii) 경제 활성화, 안전 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 iii)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

구분	2014년(A)	2015년(B)	증감(B-A)	증감율
총지출	355.8	376.0	20.2	(5.7)
1. 보건복지노동	106.4	115.5	9.1	(8.5)
※ 일자리	13.2	14.3	1.1	(7.6)
2. 교육	50.7	53.0	2.3	(4.6)
3. 문화체육관광	5.4	6.0	0.6	(10.4)
4. 환경	6.5	6.7	0.3	(4.0)
5. R&D	17.8	18.8	1.0	(5.9)
※ 창조경제	7.1	8.3	1.2	(17.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5	1.1	(7.0)
7. SOC	23.7	24.4	0.7	(3.0)
8. 농림수산물	18.7	19.3	0.6	(3.0)
9. 국방	35.7	37.6	1.9	(5.2)
10. 외교통일	4.2	4.5	0.3	(6.9)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1	(7.1)
※ 안전예산	12.4	14.6	2.2	(17.9)
12. 일반지방행정	57.2	59.2	2.0	(3.4)

※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규모 14조 940억 원(전년대비 3.4% ↑)

※ 기획재정부 「2015 예산안 발표(2014.9.18.)」 자료 중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색 사업 50선」 자료를 정보마당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 농업 관련(“농기계 안전표시등을 부착하도록 지원함”), “중국수출 유망품목(제2파프리카)을 육성함” 등), 홍릉지역 관련(“홍릉지역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경제 문화공간을 조성함”)

□ 주요 내용(농림·수산·식품 분야)

-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농어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만 원/ha → 100), 수입보장보험 도입(3개 품목) 및 재해·안전보험료 지원(4,018억 원 → 4,463)
 - (농어민의 노후보장 강화) 농지연금 확대(3.4천 건 → 4.1),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시범사업 1년 연장)
 - (생산규모화 통한 쌀 생산능가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제고) 들녘경영체 육성(20개소 → 30), 통합 RPC 지원 확대(3개소 → 6)
 - (축산분야 지원 강화) 영연방 FTA 등에 대비하여 한우 직거래 활성화(신규 120억 원), 가축개량지원(397억 원 → 477)
- [농수산물품을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적극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확대 지원
 -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 등 수출 경쟁력 제고) 전략적 지원 강화,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위해 사업체계 재편
 - (농수산물 수출판로 개척) 해외현지화지원(신규 21억 원), K-Seafood 프로젝트(신규 36억 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6차산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농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농업과 가공·식품·관광 연계해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 6차산업 집적화 단지 확대(3개소 → 6), 6차산업 지원규모: ('14) 265억 원 → ('15년) 383
 -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정착지원)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귀농귀촌 종합센터(신규: ('15년) 10억 원), 초기정착 지원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신규 70개)
- 친환경 농수산물품 지원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 강화) 친환경직불금(유기) 지원기간 확대(5년 → 8),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300억 원 → 400)
 -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 되는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계약재배·직거래매장 확대(31개소 → 35), 산지유통종합자금: ('14) 5,500억 원 → ('15년) 6,480
-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및 재해예방시설 투자 확대] AI,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및 예방백신 개발 등 기술개발(37억 원 → 58) 지원 강화, 가물, 홍수 대비한 재해예방시설 보수보강 지속 추진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 개요

- [농식품부,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한·영연방 3개국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 (한·호주) 2013.12.4일 타결, '14.4.8일 정식서명 / (한·캐나다) 2014.3.11일 타결, 6.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 8.4~8일 8차 협상
- (영향분석) 한-호주·캐나다 FTA 2015년 발효 시 향후 15년 간 총 2조 1,329억 원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
- (목표)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추진전략) i)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방안 중점 추진, ii) 투융자계획은 10년간 추가금액 15년간 피해액과 균형되도록 마련*, iii) 정책 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추진
 - ※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마련
- (예산반영) 향후 10년간(2015~2024) 총 2.1조 원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 수립, 이를 2015년 예산안 1조 3,918억 원(기존예산 포함) 반영

□ 주요 내용

■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 세부 추진과제 ■

구분		주요내용
축산업 분야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비용 절감)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사료비 절감, 가축질병 근절기반 구축
		• (품질 차별화) 가축개량 강화, 소비자 신뢰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 (수급관리 체계화) 만·관 공동 수급관리체계 구축, 관측기능 강화 및 통계 정비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 (생산비용 절감)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재배업 분야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 (노동 및 약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약취 관리대책 강화
		•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인증제 개선 및 직불금 확대, 친환경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 (피해품목 생산 및 유통 효율화) 보라·콩·감자·미늘·양파에 대한 유통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
		• (세제지원)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 개선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중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9.18.)

2014년 지방세 개편안 발표

□ 개요

-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세 개편안 발표, 9.13일]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9.15일)
 - (개편방향)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감안, **조세 체계 현실화, 조세 형평성 확보**,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납세자 중심 개선
 - (확충되는 재원 복지안전에 사용) 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각계 요구>

- (지자체) 지방소비세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 확충 요구
 - ※ 공동성명서: 시도 2013.9.12, 2014.3.17-7.278.27 / 시군구 2013.6.5, 2014.9.3
- (국 회) 비과세-감면 감축, 국세 대 지방세 비중 개선 등 정부의 대책 요구
 - ※ 지방재정개혁특위(2012), 예산재정개혁특위(2013), 지방자치발전특위(2014)
- (언 론) 지방의 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 열악한 재정 문제 지적
 - ※ '국세-지방세 8:2 비율 바꿔야', '자립 못하는 스무살 성년 텅 빈 주머니', '자정면 값도 안되는 주민세', '지자체마다 공간 비어가고 선거의식해 함부로 못 올려'

□ 주요 내용

- [개인분 주민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81만 가구, 135만 명) 주민세 자체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 '1만 원 이내 조례' → (개편)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 조례' 정하도록 하되, 2015년 하한선 7천 원(2016년에는 1만 원) 연차 조정
- [법인분 주민세] (현행) 자본금 100억 원 초과하면 법인 규모(100억 원 또는 1조 원) 상관없이 50만 원 동일 부과 → (개편) 자본규모 크고 종업원 많은 법인에 대해 4개년(2015~2018년) 걸쳐 최대 528만 원(자본금 10조 원 초과, 종업원 3,000명 초과) 까지 단계적 증액
- [자동차세] 자가용 승용차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 제외, 일부 자동차(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
 - ※ 택시(2,000CC) 3년에 걸쳐 7만 6천 원 조정,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소폭(50%, 6,600원→10,000원) 인상

- [지방세 감면]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 감면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감면 연장하면서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감면목적 달성여부, 유사 감면대상과의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폭 조정

■ 지방세 감면 재설계: 현행과 같은 수준 ■

주요 내용
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 청소년시설단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 유지 ※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 원) 적용 •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취득세 75%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50% 감면 •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할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
2 기업의 구조조정 등 기업 지원 •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결정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양수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M&A 촉진을 위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신설 ※ 향후 2년간 약 600억 원 세제 지원 효과 • 고용창출 투자 및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4%~0.7%)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시설 투자 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3%, 중소기업은 0.7%) •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감면 ※ 이전 지역별로 최초 4~7년간 면제, 이후 3년까지 50% 감면 •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3 신성장 동력 지원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 원 한도) • 전기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 원 한도)

정책브리핑

지방세 감면 재설계: 감면을 합리적 조정

주요내용
1. 지역개발사업(집적시설) 지원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 등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비수도권 50%) 감면 -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산업단지 등 집적시설과의 형평 고려, 감면을 조정(취100%, 재50 → 취·재25) ※ 사업자가 2014.12.31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2019년까지 기존대로 감면 - 관광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감면을 조정: 50% → 25)
2. R&D 지원 - 산학협력단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100% → 50)
3. 사회 기간산업 지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100% → 50)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공제(1%) 및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취2% → 1 공제)
4.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취득세는 지방재정 여건, 유사시설 형평 등 고려, 감면을 조정(100% → 50) ※ 2014.12.31 이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2018년까지 취득세 100% 감면 유지 - LH공사의 임대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주택보급 상황 등 고려, 감면을 조정(취100%, 재50 → 취·재 25) -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100% → 50) - 농협 등 중앙회(구판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수익사업 등 고려, 감면을 조정(50% → 25)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하되, 그 중앙회(신용사업 제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50~100% → 25~50) -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 고려, 감면을 조정(100% → 25)

지방세 감면 일몰 종료

-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된 감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과 입증이 미흡한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맞겨야 되는 감면은 원칙대로 종료
 - ※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관광호텔, 알뜰주유소, LH·수자원공사(3자 공급용) 부동산펀드 등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목적세), 주민세(주민부담원칙 적용)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

자료 : 안전행정부(2014.9.13./15.)